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 추진체계에 부합하는 조직기반 마련을 위하여 인재정책실·책임교육정책실·교육복지늘봄지원국·학생건강정책국을 각각 고등평생정책실·학교정책실·학생지원국·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으로 확대 개편하며,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민주시민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1명, 6급 1명), 인공지능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인공지능 인재 양성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대학 구조개선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집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고등교육기관의 의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한 의대교육지원관과 의대교육기반과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및 2년 연장하고, 입시공정성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교육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학교시설개선팀 및 정보보호팀을 각각 신설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 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xx. ~ 12. xx.)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를 “국제교육기획관으로”로, “글로벌교육기획관은”을 “국제교육기획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글로벌교육기획관”을 “국제교육기획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양성평등정책담당관·교육시설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교육국제화담당관”을 “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양성평등정책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국제교육정책담당관·교육국제화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교육시설담당관”을 “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교육국제화담당관”을 “국제교육정책담당관·교육국제화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10항제3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소관”을 “교육부 소관”으로, “심사·조정·총괄”을 “자구체계심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규제완화위원회”를 “규제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차관회의 안건”을 “차관회의”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회 입법지원 및 교육부 소관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교육부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5.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분야 규제개혁 및 규제정비 업무의 총괄
9. 국회 운영지원 및 요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10. 국정감사 및 당정협의를 관한 사항
11. 민원처리담당자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제10항제2호(종전의 제11호) 중 “소관”을 “교육부 소관”으로, “조정”을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종전의 제14항) 제16호 중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을 각각 “국제교육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그 밖에 국제교육기획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

항

제3조의3을 삭제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고등평생정책실) ① 고등평생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등평생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대학정책관·대학지원관 및 평생교육지원관으로 하며, 대학정책관·대학지원관 및 평생교육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대학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대학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5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평생교육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9호부터 제7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고등평생정책실에 대학정책과·대학학사운영과·학술연구정책과·대입정책과·지역대학지원과·산학협력지원과·국립대학지원과·사립대학지원과·대학시설지원과·평생학습정책과·전문대학지원과·청년장학지원과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을 둔다.

⑦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교육 정책의 기획·총괄
2.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총괄·수립·시행 및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협의·조정
3. 고등교육 재정 현황 및 성과 조사·분석 총괄, 재정효율화 방안 마련
4.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지원
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교원의 인사 제도 개선 및 복무에 관한 사항
7. 대학 강사제도 개선·재정 지원 사업 추진 및 비전임교원·조교제도 개선
8. 대학교원 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대학교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9.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의 수립 및 대학 학생정원 자율채정기준의 이행 점검
10. 대학 규제개혁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1. 대학 규제개혁을 위한 고등교육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총괄
12. 대학 규제개혁 과제 발굴·이행 점검 및 관리
13. 대학규제개혁협의회의 구성·운영 지원
14. 대학 행정처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행정처분위원회의 구성·운영
15. 대학 기본역량 진단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16.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7. 대학 구조개혁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총괄
18. 대학구조개혁위원회 구성·운영·지원
19.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활성화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운영
20.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원
21. 고등교육 학문분야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22. 공학교육 혁신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학교육 인증과 관련된 대학 지원
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 총괄
24. 교육 분야 민관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25. 대학정책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고등평생정책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대학학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두뇌한국(BK) 21 사업의 기획·추진
2.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의 사후관리
3. 대학의 학사제도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4. 대학 편입학 제도의 운영·개선
5. 대학원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6. 대학원 설치·운영, 학사지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7. 법률, 의학·치의학·한의학, 경영·금융·물류 등 전문지식서비스 분야의 인력양성정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의 제도 개선
8.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민간단체 및 조직 등과의 협력
9. 대학과 고등학교와의 연계 심화과정 운영 지원
10. 대학 원격교육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11. 대학인권센터 제도의 운영·개선
12. 대학생의 건강 증진 관련 현황조사 등 운영 지원

⑩ 학술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진흥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 학술지 및 학술대회 지원 등 학술단체의 육성·지원
3. 대학의 연구비 관리 및 운영 지원
4.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 및 대학연구인력의 국제 공동연구 및 교류 지원

5. 대학 연구활동의 실태 조사 및 학술통계의 조사·분석
6.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진흥, 학문후속세대 양성, 융복합 연구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인문학 대중화 및 인문학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추진
8. 인문사회·이공 분야 대학 연구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의 연도별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10.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초교양교육 강화 사업의 수립·시행
13. 기초학문자료센터의 구축·운영 및 인문사회 연구결과 사후관리·분석
14. 대학도서관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5. 학술자원 공동 관리 및 활용 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16.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대한 운영 지도 및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지원
17. 연구윤리의 확립·확산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8. 한국학 진흥 정책·사업의 기획·추진
19. 글로벌 석·박사 등 양성 및 외국박사학위 신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0.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선발을 위한 추천에 관한 사항

2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및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지원

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의 운영 지원

⑪ 대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학생선발제도 기본정책의 기획·총괄

2. 대입 단순화 및 공정성 제고 등 대학 학생선발 정책의 수립·시행

3. 대학입학 정원 외 특별전형 제도의 관리·운영

4.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입학 지원방법 준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 제도의 관리·운영

7.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운영 및 부정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 제공·분석

10.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실시 지원에 관한 사항

1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연계에 관한 사항

12. 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 지원

13. 대학 학생선발 내실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지원

14. 대입전형 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추진
  15.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운영과 관련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6.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수립·공표 지원에 관한 사항
  17.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홍보 총괄·지원
  18. 대학 입학전형료 제도에 관한 사항
  19. 대입상담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감축에 관한 사항
- ⑫ 지역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의 기획·추진
  6.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기회 및 채용 확대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공기업 등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지역혁신협업체계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범부처 대학 참여 지역혁신 정책 및 사업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

항

10. 국가균형발전 관련 고등교육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1.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체결 및 이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별 또는 초광역 협의체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4. 지역대학의 행·재정 권한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산학협력,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특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대학지원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⑬ 산학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리
  3.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개설되는 계약학과 제도의 정비 및 운영 지원
  4. 산업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 관리
  5. 학교기업 제도 관리 및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기획·추진
  6. 기술대학·사내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7.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8. 산학연협력 촉진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9. 산학연 간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공동 활용방안 수립·시행
10. 산학연협력 박람회(EXPO) 개최 지원
11. 산학연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1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운영 지원
13. 산업계와 함께하는 대학교육 포럼의 개최 및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 활용 추진
14. 대학 산학협력단 관련 제도의 운영·개선
15. 산학협동재단 및 산업별 산학연협의체의 운영 지원
16. 산학연협력 공동연구 및 중점연구소의 지원
17. 산학연협력 관련 제도·정보 연계 관리 및 우수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18. 산학연협력 백서 발간 및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조사
19.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 및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에 관한 사  
항
2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및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사회의 운영 지원
21. 산업교육센터의 지정·운영
22. 산학협력지원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 ⑭ 국립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대학 발전방안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총괄
  2. 국립대학의 설치·이전·폐지·교명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 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국립대학 교원 정원 배정 및 총액인건비제, 성과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립대학 조교 정원 배정 및 연구성과급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7.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8. 공립대학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립대학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립대학 소속 대학회계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⑮ 사립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립대학·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사립대학·법인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3. 사립대학의 설치·폐지·통폐합에 관한 사항
4.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5. 사립대학의 위치변경 및 분교 설치 인가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7.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 지원 및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8. 사립대학·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 관련 제도 운영
9. 사립대학·법인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0. 사립대학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11. 사립대학 내 민자유치사업 지원
12.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운영 지원
13.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14. 대학 세제지원 관련 제도 개선의 총괄·조정
15.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⑯ 대학시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시설에 대한 정책의 수립·지원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 교육시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교육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4. 국립대학 시설 예산 편성 및 관리
5. 시설예산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6. 국립대학 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7. 국립대학 시설의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8. 교육 차관(借款) 사업의 관리
9.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기준·현황 관리 및 공동실험실습관 운영 관리 등 교육기반 조성 사업 추진
10. 대학 기숙사 확충 방안의 수립·시행
11. 국립대학 노후선박 건조 투자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운영

13. 대학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5. 국립대학 통합정보망 관리에 관한 사항
  16. 학교복합시설 정책의 수립·시행
  17. 대학시설지원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 ⑰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학습 정책의 기획·총괄 및 제도 개선 총괄
  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3.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出捐) 및 운영 지원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연계·협력·조정
  6.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평생교육백서 발간
  7.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8. 한국형 온라인 대중강좌(K-MOOC)의 구축·운영
  9. 온라인 대중강좌 등을 활용한 산업연계 단기 직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10. 성인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한국방송통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2. 한국방송통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학사관리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13. 사이버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4.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전환 및 학생 정원 조정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6. 사이버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임원취임 승인, 정관변경, 재산처분 허가 등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7. 사이버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 지원
18. 사이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평가
19. 사이버대학 특성화 지원 및 콘텐츠 개발·공동활용 지원
20. 원격교육 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아세안 공동운영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
2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22.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지원
2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24.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및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25. 전공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26. 성인 문해교육의 실시 및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27.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 등 생활문해에 관한 사항 실시
28.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29.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제, 시간제 등록제 관련 법령  
· 제도의 운영 · 개선
30. 평생교육 관련 시설 · 단체의 운영 지원 및 제도개선
31.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32. 자격체제 및 국가역량체계의 구축 · 운영
33.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지원 및 활용
34. 민간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35. 교육훈련과정 이수에 따른 공인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36. 평생학습계좌제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37.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지원 및 대학의 학습경험인정제 지원
38. 읍 · 면 · 동 평생학습센터 및 지역사회 학습모임의 육성 지원
39. 평생교육이용권 등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충 지원
40. 온국민평생배움터의 구축 및 운영
41. 지역사회학교 등 초 · 중등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
42. 평생학습도시 지정 · 운영 및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운영 지원
43. 평생학습박람회 등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4.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및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45. 학원, 교습소 및 과외교습 관련 법령 · 제도의 운영 · 개선
46. 시 · 도교육청 학원 지도단속 정책의 수립 · 시행
47. 학원 관련 통계 관리 및 한국학원총연합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48. 평생학습정책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 49. 그 밖에 평생교육지원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⑱ 전문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전문대학 학생 정원조정계획의 수립 및 학생정원 자율책정기준의 이행 점검
- 2.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운영학과 지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에 관한 사항
- 3.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의 운영 지원
- 6. 전문대학 입시 관리 운영·지원
- 7. 전문대학의 학생선발제도 운영과 관련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8. 전문대학 학생선발제도 홍보 지원
- 9. 전문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 지원
- 10.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1. 전문대학의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에 관한 사항
- 12.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 13. 전문대학 재정지원 정책의 수립 및 개편에 관한 사항

14. 고등직업교육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5. 우수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
16. 직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을 활용한 직업과 학업 연계 프로그램 지원
17. 전문대학·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8. 전문대학·법인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체제 개편
19. 전문대학·법인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0. 전문대학·법인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추진
21. 전문대학 법인의 운영지원 및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22. 전문대학·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 관련 제도 운영
23. 전문대학·법인의 설치·폐지·통폐합에 관한 사항
24. 전문대학·법인의 위치 변경 및 분교 설치인가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5.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26. 한국폴리텍대학 이사회의 운영 지원
27. 전문대학생의 건강 증진 관련 현황조사 등 운영 지원
- ⑲ 청년장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의 총괄·기획 및 점검
  2. 교육부 소관 일자리 재정지원사업의 총괄·관리
  3.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4.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의 과제발굴·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5. 교육부 소관 정책·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6.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7.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8.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 청년정책 관련 소관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9.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10.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1. 국가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학생 근로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에 관한 사항
15.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방안 마련 및 대출 제한 대학 선정
16. 학자금대출계정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17. 학자금 지원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및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18. 대학 등록금 안정화 대책의 수립·시행
19.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20. 대학 등록금 납부제의 운영·관리

21. 등록금 감액·면제·반환·징수기일에 관한 사항
22. 대학생 1명당 교육비 및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
23. 등록금 통계산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국가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25.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26. 대학생 현장실습제도의 개선 및 관련 협의체의 구성·운영
27. 대학생 취업 지원 사업의 기획·운영
28. 대학생 해외 인턴십, 현장실습 및 연수취업의 지원
29.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장학금 지원
30. 대학의 창업 교육 및 창업 활성화 지원
31. 대학의 창업과 산업 간의 연계 방안 마련
32. 대학생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㉑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지원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지원

제7조(학교정책실) ① 학교정책실장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교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학교정책관, 학교지원관 및 교원교육자치지원관으로 하며, 학교정책관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학교지원관 및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학교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학교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8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1호부터 제7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학교정책실에 학교정책과·교육과정운영지원과·교육콘텐츠정책과·동북아역사대응팀·공교육진흥과·민주시민교육과·직업교육정책과·교원정책과·교원양성연수과·교육자치협력과·지방교육재정과·학교시설개선팀을 둔다.

⑦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동북아역사대응팀과 학교시설개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⑧ 학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개선 총괄 및 입학제도의 개선
2. 초·중등 국립학교(대학 부설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3. 초·중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4.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5.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입학전형 영향 평가의 운영 지원
6. 일반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
7.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 총괄
8.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9. 자율형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지정,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10.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1.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12.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이버 학습 운영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
14. 고교평준화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시·도 고교평준화 제도의

## 운영 지원

15.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16.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의 개선
  17. 초·중등 연구학교의 지정·운영 및 총괄·관리
  18. 국립학교인 연구학교 및 다른 부처가 요청하는 시·도 지정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19. 영어교육 강화 및 영어교사 전문성 제고 정책의 수립·시행
  20.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1. 한국교육방송 영어전용방송(EBSe)의 운영 지원
  22. 영어교육 격차 해소 및 영어 공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23. 과학고등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24. 교과특성화학교(예술·체육 계열은 제외한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5. 초·중등학교의 통합 운영 지원
  26.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학교정책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⑨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수업혁신 지원 기본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초·중등학교 수업 운영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수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홍보 지원 및 관련 기관 간 연계에 관한 사항
5.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7.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8. 교과별 교육과정해설서, 성취수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등 지원
9. 교육과정 연수 및 자료개발 등 현장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교육과정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12. 자유학기 교육과정의 운영 및 내실화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고등학교 학점 이수·미이수 제도 개선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관한 사항
14. 고교학점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5. 고교학점제 관련 실태조사 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6. 고교학점제 추진 및 지원 체제 구축·운영
17. 고교학점제 연구·선도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9.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 지역의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조성 지원
20.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21. 고교학점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원 연수 등 협력 사업 운영

22.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
  23. 선택형 교육과정의 이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4. 학생 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5. 학생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6. 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 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7.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8.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 제고 지원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9.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0. 평가관리센터 지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1. 초·중등학교 인문학 교육 및 문해교육에 관한 사항
  32. 초·중등학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 ⑩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2.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 개발에 관한 사항 지원
  3.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등 질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역사·한국사 관련 교과목 및 내용은 제외한다)
  4.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운영
6. 교과용도서의 가격 결정, 발행·공급, 보상금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7. 교과용도서 발행·공급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8. 교과용도서 개발·활용 관련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국정도서 편찬 계획의 수립·시행
10. 초·중등학교 국정도서의 개발 및 관련 연구학교의 운영
11. 검정도서 검정 계획의 수립·시행(역사·한국사 관련 교과목 및 내용은 제외한다)
12. 검정도서의 검정 업무 수탁기관의 관리·지원
13. 인정도서 개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14. 초·중등학교 국정도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15.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교육 자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디지털교과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17. 초·중등학교 교육정보 콘텐츠 및 디지털교과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18. 교육콘텐츠정책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 ⑪ 동북아역사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역사교육 강화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외국의 역사 왜곡 대응에 관한 사항

3. 해외 교과서 오류 시정에 관한 사항
4. 동북아 역사문제 대책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동북아역사재단의 운영 지원
6. 초·중등학교 독도 교육에 관한 사항
7. 초·중등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8.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등 질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역사·한국사 관련 교과목 및 내용으로 한정한다)
9. 검정도서 검정 계획의 수립·시행(역사·한국사 관련 교과목 및 내용으로 한정한다)

⑫ 공교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정책의 총괄·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2. 사교육 경감 대책의 총괄
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및 결과분석 지원
5.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6. 학습지원 담당교원 제도의 운영 지원
7.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 및 운영 실태조사 실시
8. 인공지능 기반 학력진단 체제의 구축
9. 초·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사업계획의 수립 및 국제협력
10. 초·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시행 및 결과분석 지원

11.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12. 초·중등학생의 진로교육 촉진 및 지원
13.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제·학기제 및 중학교 자유학기  
진로탐색 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진로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5. 학교급·유형별 진로교육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16.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 및 진로지도 관련 인력 활용 지원
17. 중등학교 진로·학업설계 운영 지원
18.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운영 지원
19. 진로체험 정보제공 시스템 등 진로교육 정보망 운영 지원
20. 진로 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1.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
22. 초·중등학생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23. 진로체험기관의 발굴·지원 및 인증에 관한 사항
24. 초·중등학생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지원
25. 진로교육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26. 진로교육 현황 조사 등 진로교육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27.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공공학습관리시스템 및 교원전용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지원
29. 한국교육방송공사 고교 강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30. 저소득층·소외계층의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학습 지원
  31. 사이버 학습 및 온라인 수업 운영 관련 교육정보 격차해소 지원
  32.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33.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시·도 학부모 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34.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5.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지원
  36.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정책 이해·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
  37. 학부모단체와의 협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8.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39. 교육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0. 공교육진흥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41. 그 밖에 학교지원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3. 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6. 초·중등학생 자치역량 강화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정책의 수립·시행

7. 학생 간 상담 및 학생 간 중재 활동 지원
8. 학교 내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9. 초·중등학생 독서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0.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1. 사서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12. 초·중등학생 기후변화환경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13. 초·중등학생 헌법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14.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5. 학교 체육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체육 수업 내실화 지원
16. 학생선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스포츠강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8. 학교체육중앙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19. 체육계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지원
20.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21. 학교 예술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술 수업 내실화 지원
22. 문화 소외 학생의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3. 예술고등학교 및 예술계열 교과특성화학교 예술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4. 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5.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및 예술교육공간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⑭ 직업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2.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촉진,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

3.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4.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및 해외취업·인턴십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성화고등학교의 체제 개편 지원 및 제도 개선

6. 거점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 및 소규모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통합에 관한 사항

7.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8.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센터 운영 지원

9.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및 교과용도서의 개발·운영 지원

10.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 교재의 개발 및 개선

11.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기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13.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전국 단위 취업지원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14. 정부부처·산업체·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육성에 관한 사항
15.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시행
16. 국가 수준 직업기초능력 인증제도의 수립·시행
17.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직업기초능력의 함양 및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8. 산업체 인사의 직업계고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19. 전국단위 실무 경진대회 및 고등학교 직업교육 연구대회의 운영 지원
20.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병역제도 관련 지원
2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2. 자격 기반 교육과정(과정평가형 및 일학습 자격)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3. 중등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⑮ 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 초·중등교원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3. 초·중등교원의 복무,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책임 및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5. 교장 공모제도의 운영
6. 수석교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원 포상에 관한 사항
8.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수립
9.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 소속 교원의 정원 관리
10.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11.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12. 스승의 날 행사 기획 및 지원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14.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
15. 교육공무원의 전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교원교육자치지원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⑯ 교원양성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교원 양성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2. 교육대학 · 사범대학 · 교육대학원의 설치 · 폐지와 학생 정원 조정  
· 운영
3. 교직과정의 설치 · 폐지 및 교직 관련 학과의 운영 지원
4.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의 인사 · 학사제도 운영 및 개선
5. 교원 신규임용 시험 · 임용방식 다양화에 관한 사항
6. 교원 자격검정 기본정책 및 교원 자격검정기준의 수립 · 시행
7.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원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
8. 초 · 중등교원 연수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제도 개선
9. 교원 연수체제 개편 및 원격교육연수 제도의 운영 지원
10. 초 · 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1. 교원연수기관의 설치 · 폐지 · 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12. 교원연구대회에 관한 사항
13. 교원학습연구년제에 관한 사항
14. 교원양성 · 연수기관의 평가
15. 교육공무원의 보수(성과상여금을 포함한다.) · 복리 · 후생 관련 법령 · 제도의 운영 · 개선
16.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17.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시행
18. 교원단체의 설립 · 해산 및 운영 지원
19.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20.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조정 및 갈등관리

21. 교원양성연수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⑰ 교육자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지방교육자치의 강화 및 협력

3. 교육특구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정원(교원은 제외한다) 관리

5.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복무·급여·교육훈련 제도 개선

6.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진단

8.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10. 학교 평가제도 개선 및 지원

11.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2. 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13. 유치원 및 초·중등 국립학교에 소속된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4.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15.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총액인건

비 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인사관리 지원,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⑱ 지방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3. 국세·지방세 제도 및 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

4.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통교부금의 교부 및 교부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6. 특별교부금의 교부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학교회계 제도 및 예산·결산 분석에 관한 사항

8.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련 업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회계·결산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기준 및 결산 작성기준의 수립과 예산·결산 통계의 분석

11.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회계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립 초·중·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1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통합 등 적정 규모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15.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및 재정 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16. 시·도교육청의 금고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유도 및 제도 개선
  18. 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및 지방교육 기능분류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방교육재정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0. 지방교육재정의 진단·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등 지방교육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
  21. 지방교육재정 통합공시 및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2. 시·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3. 초·중·고·특수학교 학교발전기금 제도에 관한 사항
- ⑩ 학교시설개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교육시설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초·중등학교 교육시설의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초·중등학교 노후학교 개선 등 시설환경개선 및 관련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4. 초·중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5. 초·중등학교 교육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
7. 초·중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국립부설(특수)학교 시설 예산 편성 및 관리
9. 시·도교육청 및 초·중등학교 시설 관련 유관기관 지원 및 지도
10. 학교시설개선팀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을 “(학생지원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을 “학생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학생지원국에 학생지원총괄과·방과후돌봄정책과 및 특수교육정책과를 둔다.

제8조제3항 중 “장학관으로, 이주배경학생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을 “장학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생맞춤통합지원과장”을 “학생지원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추진”을 “추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북한배경학생 교육 지원

26. 이주배경학생(「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교육 지원 기본계획 수립
27. 이주배경학생 교육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28. 이주배경학생 교육에 대한 중장기 전망 및 분석
29. 이주배경학생 교육 관련 실태조사 실시
30.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31.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32.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 추진
33. 다문화학생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4. 학생·학부모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회인식 개선 정책의 수립·추진
35. 다문화학생등 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 및 연수 지원

제8조제4항제37호를 제36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37호) 중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학생지원총괄”로 하며, 같은 항 제38호 중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을 “학생지원국”으로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늘봄학교정책과장”을 “방과후돌봄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 중 “늘봄학교”를 각각 “초등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으로 하고, 같은 호 중 “교육프로그램·공간·인력”을 “공간·프로그램·인력”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늘봄학교”를 “초등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으로, “교육프로그램·공간·인력”을 “공간·프로그램·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늘봄학교”를 “초등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으로, “교육프로그램·공간·인력”을 “공간·프로그램·인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늘봄학교”를 “초등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으로, “교육프로그램·공간·인력”을 “공간·프로그램·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늘봄학교”를 “초등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등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 정책의 총괄

15. 방과후 교육비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6.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제8조제6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8호, 제9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제공”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국립특수학교”를 “국립특수학교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7.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의2제6항제23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어린이집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제7항제3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영유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영유아 안전”을 “안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 및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보육전자바우처를 말한다)”를 “영유아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유치원·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1.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운영 지원 및 지도

제8조의2제10항제2호 중 “영유아 교원”을 “유치원 교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이하 “영유아 교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원”을 “정원 및 임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의 임용 및 공모”를 “어린이집 교직원의 임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임용”을 “복무 및 근무여건 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복무”를 “보수체계 및 처우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11호) 중 “평가”를 “역량개발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영유아교원의 교육·보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26. 유치원 급식, 보건 업무 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제10항제11호(중전의 제13호) 중 “교원 및”을 “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의3의 제목 “(학생건강정책국)”을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생건강정책국장”을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생건강정책국에 학생건강정책과·인성체육예술교육과·사회정서성장지원”을 “학생건강안전정책국에 학생건강정책과·교육안전정책과·학생정서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립·시행”을 “총괄·수립·시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학생건강 실태조사 운영 지원 및 초·중등학교 건강검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의3제4항제9호 중 “학교급식”을 “초·중등학교 학교급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학교급식비”를 “초·중등학교 학교급식비”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중 “학교급식”을 각각 “초·중등학교 학교급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학생건강정책국”을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한다.

제8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을 “교육안전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5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학교 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2.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 학교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4. 범정부 차원의 안전 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5. 학교안전과 관련한 재난대비 매뉴얼과 안전 관련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6. 행정안전부 등 안전과 관련한 재난상황관리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운영
7. 부 내 상황실 상황관리 관련 업무의 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8. 학교안전 위기상황 종합관리
9. 학교안전 관련 위기상황의 접수·전파·보고
10. 학교안전 관련 국가재난 대비 훈련의 준비·계획·실시·평가
11. 소관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업무의 종합·총괄
12.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14.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5. 학교 안전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6. 각급 학교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17.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안전관리업무 지도·감사
18. 학생안전지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9. 교육시설의 안전·유지 관리 실태 점검

20. 교육시설 안전 인증에 관한 사항
21.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22. 교육시설 안전·재난 관련 통계 및 현황 관리
23. 교육시설 안전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24.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
25.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치 설치·운영의 총괄·조정

제8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정서성장지원과장”을 “학생정서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회정서능력”을 “사회정서역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을 “초·중등학교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초·중등 학생자살”을 “학생자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자격연수, 재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의”를 “역량 및 전문성 향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학생 마음건강 지원정책 수립·추진 및 제도 개선
5. 초·중등학교 정신건강검사제도에 관한 사항
7. 전문상담교사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10. 비대면 상담망 구축 및 운영 지원
11.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운영 및 시·도교육청 학생상담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학생마음건강지원 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13. 초·중등학교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체계 및 응급심리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14. 초·중등학교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의3제7항제1호 중 “학교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수립·시행”을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학  
교 폭력 근절”을 “학교폭력 예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  
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학생”을 “초·중등학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학생”을 “초·중등학생”  
으로 한다.

4. 초·중등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회복 등의 지원, 가  
해학생 선도교육 지원 및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지원

9. 초·중등학생 언어문화 개선 지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 ① 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장은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  
등급으로 한다.

② 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 밑에 인재정책총괄과·인공지능교육진흥  
과·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디지털교육기반과·교육데이터정책과  
·정보보호팀을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인재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의 기획·총괄
2. 국가인재양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국가인재양성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4. 범부처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5. 인력수급 전망 관련 조사·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6. 대한민국 인재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7. 인재양성 우수기관 인증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인재정책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적역량 전략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경험·역량 등의 인증, 활용을 위한 디지털 배지 정책 도입 및 추진
11. 교육부 소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에 관한 정책의 기획·총괄
12. 교육부 소관 인공지능 및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의 기획·총괄
13. 교육부 소관 인공지능 및 디지털 인재양성 관련 법령·제도의 개

선

14. 범정부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 관련 협력에 관한 사항
15.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활용에 관한 사항
16.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협력 및 교육정보 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제기구 및 다자간 이러닝 협력사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교육정보화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이러닝 관련 박람회·국제세미나 등 총괄·지원
18. 이러닝 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운영·지원 및 민간기업과의 정보화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
19.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20. 에듀테크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및 민간과의 협력
21. 그 밖에 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인공지능교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과학·수학·정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초·중등학교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3. 초·중등학교 인공지능교육 및 융합인재교육(STEAM)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4. 초·중등학교 인공지능 및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의 기획·수립
5. 초·중등학교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6. 인공지능 및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및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8. 체험·탐구·활용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총괄
  9. 초중등학교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역량 함양 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1.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2. 교원의 교육정보화 연수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
  13. 학교 디지털 문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4. 초·중등학교 에듀테크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교원 대상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 ⑥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평생교육 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고등·평생교육 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의 수립·시행
  3. 고등·평생교육 분야 인공지능 융합전공, 복수 연계전공의 운영 지원

4. 고등·평생교육 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인재양성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5. 산업 분야별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협력
6. 산업 분야별 범부처 인재양성 지원 사업의 수립·추진에 관한 협력
- ⑦ 디지털교육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분야 디지털 기반 관련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2. 교육 분야 디지털 기반 고도화에 관한 사항
  3. 교육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4. 교육 정보화 관련 제도 및 표준에 관한 사항
  5. 교육관련기관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운영
  6. 교육정보화 기기 관련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교육정보화 사업 사전협의제도의 운영
  8. 교육정보화 예산의 검토 및 조정
  9.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운영
  10. 부 내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1. 부 내 포털, 온나라시스템, 맞춤형 업무시스템의 구축·운영, 대표 홈페이지의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립학교의 교육 정보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13.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보급
  14.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온라인 교육 민원서비스 운영 지원
  15.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학생·학부모 서비스 제공

16. 입학 전형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정보의 상급학교에의 제공
  17.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
  18. 교육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9. 한국교육정보화재단 운영 지원
  20. 인공지능·디지털 교수·학습·분석 체계 기반 구축
- ⑧ 교육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 및 교수·학습 등 교육 분야 데이터 및 통계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2. 교육기본통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3. 교육기본통계 조사 및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운영
  4. 교육기본통계 조사기준 및 표준화된 조사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5. 교육기본통계의 운영
  6. 교육 관련 주요지표 개발 및 관리
  7. 교육 관련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8. 국제교육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9. 교육통계의 통합 조정 및 품질관리 지원
  10. 교육정보통계위원회의 구성·운영
  11. 교육정보공시(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기획·총괄·조정
  12. 교육정보공시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13. 교육정보공시 시스템의 구축·운영
  14. 교육정보 공시기준 및 표준화된 공시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15. 교육정보공시제의 운영
  16. 교육정보통계 활용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17.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8.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9. 사교육비 조사의 실시 지원 및 결과 분석
  20. 통계 기반 교육정책·연구의 지원
  21. 교육 분야 데이터의 개방에 관한 사항
  2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23. 직업계고 및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에 관한 사항
- ⑨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관련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2.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및 교육기관 보안관제 실시
  3.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및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관리
  5. 교육관련기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보호
  6. 교육관련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수준에 대한 진단·점검
  7. 교육관련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8. 교육관련기관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보안적합성 검증 및 보안취약점의 점검·분석
9. 교육관련기관의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훈련 계획 수립·시행
10. 교육관련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처리
11. 교육관련기관의 보안서버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2. 교육관련기관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책 수립 및 지원

제18조제3항 중 “교육 분야 공무원로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을 “교육 분야 공무원로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으로 한다.

제24조제5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671”을 “683”으로, 특정직 계 “91”을 “94”로, 교육연구관 “20”을 “21”로, 교육연구사 “57”을 “59”로, 일반직 계 “574”를 “583”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4”를 “55”로,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193”을 “197”로,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통계주사·사

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식품위생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소 “146”을 “149”로,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7”을 “48”로, 행정서기보·사서서기보·공업서기보·보건서기보·식품위생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0”을 “22”로, 사무운영서기보 “10”을 “8”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71”을 “683”으로, 특정직 계 “91”을 “94”로, 교육연구관 “20”을 “21”로, 교육연구소 “57”을 “59”로, 일반직 계 “574”를 “583”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6”을 “57”로,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소 “193”을 “197”로,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식품위생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소 “144”를 “147”로, 행정주사보·사회복지

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7”을 “48”로, 행정서기보·사서서기보·공업서기보·보건서기보·식품위생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0”을 “22”로, 사무운영서기보 “10”을 “8”로 한다.

별표 8 1. 의대교육지원관(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및 2. 의대교육기반과(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대교육지원관(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2. 의대교육기반과(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별표 9 “4. 제24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2월 28일)”을 삭제하고, “총계 2”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2”를 삭제하고, “행정사무관 1”를 삭제하며, “행정주사 1”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 별표1의2, 별표9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학교시설개선팀 및 정보보호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학교시설개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및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학교시설개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지방교육재정과장이,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디지털교육기반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획조정실장) ① (생략)</p> <p>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u>글로벌교육기획관</u>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u>글로벌교육기획관</u>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p> <p>③ (생략)</p> <p>④ <u>글로벌교육기획관</u>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9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p> <p>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u>기획담당관 · 예산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교육시설담당관 · 비상안전담당관 ·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 교육국제화담당관</u> 및 재외교육지원담당관 각 1</p>	<p>제3조(기획조정실장)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 <u>국제교육기획관</u>으로 ----- <u>국제교육기획관</u>은 -----</p> <p>-----.</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국제교육기획관</u>-----</p> <p>-----</p> <p>-----.</p> <p>⑤ ----- <u>기획담당관 · 예산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비상안전담당관 · 국제교육정책담당관 · 교육국제화담당관</u> -----</p> <p>-----</p>

명을 둔다.

⑥ 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교육시설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교육국제화담당관 및 재외교육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 ⑨ (생략)

⑩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 설>

1.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조정·총괄
2.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의 총괄
3.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

⑥ 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

-- 국제교육정책담당관·교육국제화담당관 -----

-----  
-----  
-----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  
-----  
-----.

1. 국회 입법지원 및 교육부 소관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교육부 소관 -----  
-- 자구체계심사

<삭 제>

<삭 제>

4. 교육부 소송사무 및 행정심

5. 교육 관련 규제법령의 정비 및 규제개혁 총괄

<신 설>

6.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규제심사 지원

7.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 총괄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전에 관한 사항

9. 국정감사 업무 총괄

10. 국회 상황 파악 및 보고

<신 설>

11.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 대학 행정처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행정처분위원회의 구성·운영

13. 민원처리담당자 법적 지원 총괄

⑪ 교육시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

관에 관한 사항

5.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분야 규제개혁 및 규제정비 업무의 총괄

7. -----  
-- 규제심사위원회 ---

<삭 제>

8. ----- 차관회의 -----  
-----

9. 국회 운영지원 및 요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10. 국정감사 및 당정협의에 관한 사항

11. 민원처리담당자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부 소관 -----  
-- 관리

<삭 제>

<삭 제>

<삭 제>

한다.

1. 교육시설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교육시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교육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4. 국립학교 시설 예산 편성 및 관리
5. 시설예산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6. 국립대학 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의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8. 초·중등학교 시설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9. 교육 차관(借款) 사업의 관리
10.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기준·현황 관리 및 공동실험실습관 운영 관리
11.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사업 추진
12. 대학 기숙사 확충 방안의 수립·시행
13. 학교복합시설 정책의 수립

· 시행

14. 디지털교육 체제 전환, 교육 과정 연계, 개별화 학습 지원을 위한 노후학교 개선 및 관련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15.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정보 관리를 위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6. 국립대학 노후선박 건조 투자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교육시설 분야의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18.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 운영

19. 대학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운영 지원 및 지도

21. 교육시설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⑫·⑬ (생략)

⑭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⑪·⑫ (현행 제12항 및 제13항과 같음)

⑬ 국제교육정책담당관-----  
-----  
-----.

1. ~ 15. (생략)
16.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⑮ · ⑯ (생략)

제3조의3(디지털교육기획관) ①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디지털교육기획관 밑에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 디지털인프라담당관 · 교육데이터담당관 및 교육데이터기반성과분석팀장 각 1명을 둔다.

③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교육데이터기반성과분석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1. ~ 15. (현행과 같음)
16. 국제교육정책담당관 -----  
-----  
-----

17. 그 밖에 국제교육기획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⑭ · ⑮ (현행 제15항 및 제16항과 같음)

<삭제>

· 임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디지털교육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교육부 소관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의 기획 · 총괄
2. 교육부 소관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의 기획 · 총괄
3. 디지털교육 및 디지털 인재양성 관련 법령 · 제도의 개선
4. 범정부 디지털 정책 관련 협력에 관한 사항
5.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활용에 관한 사항
6. 교육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7. 교육 정보화 관련 제도 및 표준에 관한 사항
8. 교육 관련 기관 정보화책임

관 협의회 운영

9.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협력 및 교육정보 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제기구 및 다자간 이러닝 협력사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정보화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이러닝 관련 박람회·국제세미나 등 총괄·지원
11. 이러닝 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운영·지원 및 민간기업과의 정보화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
12.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3.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
14. 학교 디지털 문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5.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16. 에듀테크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및 민간과의 협력
17. 그 밖에 디지털교육기획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

하지 않는 사항

⑤ 디지털인프라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디지털교육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교육 분야 디지털인프라 관련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2. 교육 분야 디지털인프라 고도화에 관한 사항
3. 교육정보화 기기 관련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교육정보화 사업 사전협의제도의 운영
5. 교육정보화 예산의 검토 및 조정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운영
7. 부 내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부 내 포털, 온나라시스템, 맞춤형 업무시스템의 구축·운영, 대표 홈페이지의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보급
10.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온라

인 교육 민원서비스 운영 지원

1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학생·학부모 서비스 제공

12. 입학 전형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정보의 상급 학교에의 제공

13.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

14. 교육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5. 대학 교육전산망협의회 운영 지원

16. 교육 관련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17.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및 교육기관 보안관제 실시

18.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9.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및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관리

20. 교육 관련기관 주요 정보통

신기반시설의 지정·보호

21. 교육 관련기관 개인정보보  
호 및 정보보안 수준에 대한  
진단·점검

22. 교육 관련기관 개인정보보  
호 및 정보보안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23. 교육 관련기관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보안적합성 검증  
및 보안취약점의 점검·분석

24. 교육 관련기관의 사이버분  
야 위기대응 훈련 계획 수립  
·시행

25. 교육 관련기관의 사이버 침  
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  
고 조사·처리

26. 교육 관련기관의 보안서버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7. 교육 관련기관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책 수립 및 지원

⑥ 교육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  
항에 관하여 디지털교육기획관  
을 보좌한다.

1. 행정 및 교수·학습 등 교육  
분야 데이터 및 통계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2. 교육기본통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3. 교육기본통계 조사 및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운영
4. 교육기본통계 조사기준 및 표준화된 조사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5. 교육기본통계의 운영
6. 교육 관련 주요지표 개발 및 관리
7. 교육 관련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8. 국제교육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9. 교육통계의 통합 조정 및 품질관리 지원
10. 교육정보통계위원회의 구성·운영
11. 교육정보공시(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기획·총괄·조정
12. 교육정보공시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13. 교육정보공시 시스템의 구축·운영
14. 교육정보 공시기준 및 표준

화된 공시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15. 교육정보공시제의 운영

16. 교육정보통계 활용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17.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의 구축  
· 운영

18. 삭제

19. 삭제

20.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1. 사교육비 조사의 실시 지원  
및 결과 분석

22. 삭제

⑦ 교육데이터기반성과분석팀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디지  
털교육기획관을 보좌한다.

1. 통계 기반 교육정책·연구의  
지원

2. 교육 관련 정보의 개방에 관  
한 사항

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  
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제6조(인재정책실) ① 인재정책실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제6조(고등평생정책실) ① 고등평  
생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재정책기획관·지역인재정책관 및 평생직업교육정책관으로 하며, 인재정책기획관·지역인재정책관 및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인재정책기획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인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지역인재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9호부터 제50호까지 및 제52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등평생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대학정책관·대학지원관 및 평생교육지원관으로 하며, 대학정책관·대학지원관 및 평생교육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대학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대학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5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평생교육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9호부터 제75호까지의

0조제3항제54호부터 제8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인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인재정책실에 인재양성정책과 · 인재양성지원과 · 학술연구정책과 · 인재선발제도과 · 대학규제혁신추진단 · 지역인재정책과 · 지역혁신대학지원과 ·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 대학경영혁신지원과 · 평생직업교육기획과 · 평생학습지원과 ·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고등직업교육정책과 · 청년장학지원과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을 둔다.

⑦ 각 과장 및 단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사항에 관하여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고등평생정책실에 대학정책과 · 대학학사운영과 · 학술연구정책과 · 대입정책과 · 지역대학지원과 · 산학협력지원과 · 국립대학지원과 · 사립대학지원과 · 대학시설지원과 · 평생학습정책과 · 전문대학지원과 · 청년장학지원과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을 둔다.

⑦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교육 정책의 기획 · 총괄

⑧ 인재양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재양성 및 고등교육 정책의 기획·총괄
2. 국가인재양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국가인재양성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4. 범부처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5. 인력수급 전망 관련 조사·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6.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통계에 관한 사항
7. 대한민국 인재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인재양성 우수기관 인증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인재정책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적역량 전략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학교육 혁신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학교육 인증과

2.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총괄·수립·시행 및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협의·조정
3. 고등교육 재정 현황 및 성과 조사·분석 총괄, 재정효율화 방안 마련
4.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지원
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교원의 인사 제도 개선 및 복무에 관한 사항
7. 대학 강사제도 개선·재정 지원 사업 추진 및 비전임교원·조교제도 개선
8. 대학교원 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대학교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9.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의 수립 및 대학 학생정원 자율 책정기준의 이행 점검
10. 대학 규제개혁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1. 대학 규제개혁을 위한 고등

- 관련된 대학 지원
12. 교육경험·역량 등의 인증, 활용을 위한 디지털 배지 정책 도입 및 추진
13.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의 수립 및 대학 학생정원 자율 책정기준의 이행 점검
14. 대학 강사제도 개선·재정 지원 사업 추진 및 비전임교원·조교제도 개선
15. 대학교원의 인사 제도 개선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6. 대학교원 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대학교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17. 교육 분야 민관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18. 인재양성정책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인재정책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⑨ 인재양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교육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총괄
12. 대학 규제개혁 과제 발굴·이행 점검 및 관리
13. 대학규제개혁협의회의 구성·운영 지원
14. 대학 행정처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행정처분위원회의 구성·운영
15. 대학 기본역량 진단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16.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7. 대학 구조개혁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총괄
18. 대학구조개혁위원회 구성·운영·지원
19.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활성화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운영
20.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원
21. 고등교육 학문분야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22. 공학교육 혁신시책의 수립

1. 산업 분야별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협력
2. 산업 분야별 범부처 인재양성 지원 사업의 수립·추진에 관한 협력
3. 두뇌한국(BK) 21 사업의 기획·추진
4.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의 사후관리
5. 대학의 학사제도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6. 대학 편입학 제도의 운영·개선
7. 대학원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8. 대학원 설치·운영, 학사지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9. 법률, 의학·치의학·한의학, 경영·금융·물류 등 전문지식서비스 분야의 인력양성정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의 제도 개선
10.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민간단체 및 조직 등과의 협력
11. 산업교육센터의 지정·운영

- 시행 및 공학교육 인증과 관련된 대학 지원
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 총괄
  24. 교육 분야 민관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25. 대학정책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고등평생정책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⑨ 대학학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두뇌한국(BK) 21 사업의 기획·추진
  2.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의 사후관리
  3. 대학의 학사제도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4. 대학 편입학 제도의 운영·개선
  5. 대학원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6. 대학원 설치·운영, 학사지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12. 대학과 고등학교와의 연계  
심화과정 운영 지원

13. 대학 원격교육 관련 제도 개  
선 및 지원

14. 대학인권센터 제도의 운영  
· 개선

⑩ 학술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학술진흥정책의 수립·총괄  
· 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 학술지 및 학술대회 지원 등  
학술단체의 육성·지원

3.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비 운영에 관한 사항

4.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  
및 대학연구인력의 국제 공동  
연구 및 교류 지원

5. 대학 연구활동의 실태 조사  
및 학술통계의 조사·분석

6.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진  
흥, 학문후속세대 양성, 융복  
합 연구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인문학 대중화 및 인문학 연  
구성과의 활용·확산 추진

7. 법률, 의학·치의학·한의학,  
경영·금융·물류 등 전문지

식서비스 분야의 인력양성정  
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

의 제도 개선

8.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민간단  
체 및 조직 등과의 협력

9. 대학과 고등학교와의 연계  
심화과정 운영 지원

10. 대학 원격교육 관련 제도 개  
선 및 지원

11. 대학인권센터 제도의 운영  
· 개선

12. 대학생의 건강 증진 관련 현  
황조사 등 운영 지원

⑩ 학술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학술진흥정책의 수립·총괄  
· 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 학술지 및 학술대회 지원 등  
학술단체의 육성·지원

3. 대학의 연구비 관리 및 운영  
지원

4.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  
및 대학연구인력의 국제 공동

8. 인문사회·이공 분야 대학 연구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의 연도별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10.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초교양교육 강화 사업의 수립·시행
13. 기초학문자료센터의 구축·운영 및 인문사회 연구결과 사후관리·분석
14. 대학도서관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5. 학술자원 공동 관리 및 활용 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16.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대한 운영 지도 및 도서관정보정책 위원회의 지원
17. 연구윤리의 확립·확산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 과 관련 법령·제

- 연구 및 교류 지원
5. 대학 연구활동의 실태 조사 및 학술통계의 조사·분석
6.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진흥, 학문후속세대 양성, 융복합 연구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인문학 대중화 및 인문학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추진
8. 인문사회·이공 분야 대학 연구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의 연도별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10.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초교양교육 강화 사업의 수립·시행
13. 기초학문자료센터의 구축·운영 및 인문사회 연구결과 사후관리·분석
14. 대학도서관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

도의 운영·개선

- 18. 한국학 진흥 정책·사업의  
기획·추진
  - 19. 글로벌 석·박사 양성 및 외  
국박사학위 신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
  - 20.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할 전  
문연구요원 선발을 위한 추천  
에 관한 사항
  - 2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  
국고전번역원 및 한국연구재  
단의 운영 지원
  - 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회의 운영 지원
- ⑪ 인재선발제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 1. 대학 학생선발제도 기본정책  
의 기획·총괄
  - 2. 대입 단순화 및 공정성 제고  
등 대학 학생선발 정책의 수  
립·시행
  - 3. 대학입학 정원 외 특별전형  
제도의 관리·운영
  - 4.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  
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령·제도의 운영·개선

- 15. 학술자원 공동 관리 및 활용  
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 16.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대한  
운영 지도 및 국가도서관위원  
회의 지원
  - 17. 연구윤리의 확립·확산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정  
책의 수립 과 관련 법령·제  
도의 운영·개선
  - 18. 한국학 진흥 정책·사업의  
기획·추진
  - 19. 글로벌 석·박사 등 양성 및  
외국박사학위 신고 관련 정책  
의 수립 및 지원
  - 20.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할 전  
문연구요원 선발을 위한 추천  
에 관한 사항
  - 2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  
국고전번역원 및 한국연구재  
단의 운영 지원
  - 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회의 운영 지원
- ⑪ 대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대학입학 지원방법 준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 제도의 관리·운영
7.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운영 및 부정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 제공·분석
10.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실시 지원에 관한 사항
1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연계에 관한 사항
12. 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 지원
13. 대학 학생선발 내실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지원
14. 대입전형 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추진
15.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운영

1. 대학 학생선발제도 기본정책의 기획·총괄
2. 대입 단순화 및 공정성 제고 등 대학 학생선발 정책의 수립·시행
3. 대학입학 정원 외 특별전형 제도의 관리·운영
4.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입학 지원방법 준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 제도의 관리·운영
7.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운영 및 부정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 제공·분석
10.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실시 지원에 관한 사항
1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연계에

과 관련된 한국대학교육협의  
회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  
항

16.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수립  
·공표 지원에 관한 사항

17.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홍보  
총괄·지원

18. 대학 입학전형료 제도에 관  
한 사항

19. 대입상담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감축에 관  
한 사항

⑫ 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규제개혁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대학 규제개혁을 위한 고등  
교육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개선 총괄

3. 대학 규제개혁 과제 발굴·  
이행 점검 및 관리

4. 대학규제개혁협의회의 구성  
·운영 지원

5.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

관한 사항

12. 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운  
영 지원

13. 대학 학생선발 내실화 및 공  
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지원

14. 대입전형 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추진

15.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운영  
과 관련된 한국대학교육협의  
회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  
항

16.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수립  
·공표 지원에 관한 사항

17.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홍보  
총괄·지원

18. 대학 입학전형료 제도에 관  
한 사항

19. 대입상담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감축에 관  
한 사항

⑫ 지역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

정책의 수립·시행

6. 대학 구조개혁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총괄
  7. 대학구조개혁위원회 구성·운영·지원
  8. 대학 기본역량 진단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활성화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운영
  10.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원
  11. 고등교육 학문분야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 총괄
- ⑬ 지역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사업의 기획·추진
6.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기회 및 채용 확대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공기업 등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지역혁신 협업체계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범부처 대학 참여 지역혁신정책 및 사업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가균형발전 관련 고등교육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의 기획·추진
6.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기회 및 채용 확대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공기업 등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지역혁신 협업체계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범부처 대학 참여 지역혁신 정책 및 사업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가균형발전 관련 고등교육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1.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체결 및 이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별 협의체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체결 및 이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별 또는 초광역 협의체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4. 지역대학의 행·재정 권한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간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산학협력,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특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대학지원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⑬ 산학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리

3.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개설되는 계약학과 제도의 정비

1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4. 지역대학의 행·재정 권한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국립대학의 설치·이전·폐지·교명 변경에 관한 사항

16.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 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7. 공립대학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국립대학 교원 정원 배정 및 총액인건비제, 성과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9. 국립대학 조교 정원 배정 및 연구성과급 지원에 관한 사항

20.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1.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22. 그 밖에 지역인재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⑭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

및 운영 지원

4. 산업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 관리

5. 학교기업 제도 관리 및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기획·추진

6. 기술대학·사내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7. 국가산학협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8. 산학협력 촉진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9. 산학연 간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공동 활용방안 수립·시행

10. 산학협력 박람회(EXPO) 개최 지원

11. 산학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12.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운영 지원

13. 산업계와 함께하는 대학교육 포럼의 개최 및 산업기술 인력의 양성·활용 추진

14. 대학 산학협력단 관련 제도의 운영·개선

15. 산학협동재단 및 산업별 산

- 업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 선도대학(전문대학 포함) 육성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 거점 구축을 위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운영 지원
6. 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7. 고등교육 재정 현황 분석·확충·총괄 및 재정효율화 방안 마련
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10. 국립대학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⑮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은

- 학연협의체의 운영 지원
16. 산학협력력 공동연구 및 중점연구소의 지원
17. 산학협력력 관련 제도·정보 연계 관리 및 우수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18. 산학협력력 백서 발간 및 산학협력력 관련 통계 조사
19.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 및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2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및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사회의 운영 지원
21. 산업교육센터의 지정·운영
22. 산학협력지원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 ⑭ 국립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대학 발전방안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총괄
2. 국립대학의 설치·이전·폐지·교명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 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리
3.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개설되는 계약학과 제도의 정비 및 운영 지원
4. 산업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 관리
5. 대학생 현장실습제도의 개선 및 관련 협의체의 구성·운영
6. 학교기업 제도 관리 및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기획·추진
7. 기술대학·사내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8.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9. 산학연협력 촉진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0. 산학연 간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공동 활용방안 수립·시행
11. 산학연협력 박람회(EXPO) 개최 지원

항

4. 국립대학 교원 정원 배정 및 총액인건비제, 성과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립대학 조교 정원 배정 및 연구성과급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 기본 정책의 수립·시행
  7.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8. 공립대학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립대학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립대학 소속 대학회계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 ⑮ 사립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립대학·법인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시행
  2. 사립대학·법인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3. 사립대학의 설치·폐지·통폐합에 관한 사항

12. 산학연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13.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운영 지원

14.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의 시행 및 산업기술인력의 양성·활용 추진

15. 산학협동재단 및 산업별 산학연합의체의 운영 지원

16. 산학연협력 공동연구 및 중점연구소의 지원

17. 산학연협력 백서 발간 및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조사

18.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 및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및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사회의 운영 지원

20. 대학생 취업 지원 사업의 기획·운영

21. 대학생 해외 인턴십, 현장실습 및 연수취업의 지원

22.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장학금 지원

23. 대학의 창업 교육 및 창업

4.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5. 사립대학의 위치변경 및 분교 설치 인가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7.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 지원 및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8. 사립대학·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 관련 제도 운영

9. 사립대학·법인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0. 사립대학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11. 사립대학 내 민자유치사업 지원

12.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운영 지원

13.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14. 대학 세제지원 관련 제도 개

활성화 지원

24. 대학의 창업과 산업 간의 연계 방안 마련

25. 대학생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6.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⑩ 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립대학·법인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시행

2. 사립대학·법인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3. 사립대학의 설치·폐지·통폐합에 관한 사항

4.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5. 사립대학의 위치변경 및 분교 설치 인가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7.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 지원 및 기

선의 총괄·조정

15.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⑩ 대학시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시설에 대한 정책의 수립·지원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 교육시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교육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4. 국립대학 시설 예산 편성 및 관리

5. 시설예산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6. 국립대학 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7. 국립대학 시설의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8. 교육 차관(借款) 사업의 관리

9.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기준·현황 관리 및 공동실험실습관 운영 관리 등 교육기반 조성 사업 추진

10. 대학 기숙사 확충 방안의 수

- 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8. 사립대학·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 관련 제도 운영
9. 사립대학·법인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0. 사립대학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11. 삭 제
12. 사립대학 내 민자유치사업 지원
13.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14. 대학 세제지원 관련 제도 개선의 총괄·조정
- 15.·16. 삭 제
- ⑰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 정책의 기획·총괄
2.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 관련 제도 개선 총괄
3.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 립·시행
11. 국립대학 노후선박 건조 투자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 운영
13. 대학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5. 국립대학 통합정보망 관리에 관한 사항
16. 학교복합시설 정책의 수립·시행
17. 대학시설지원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 ⑰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학습 정책의 기획·총괄 및 제도 개선 총괄
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3.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出捐) 및 운영 지원

4.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 운영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  
(出捐) 및 운영 지원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평생  
학습 진흥을 위한 연계·협력  
· 조정
7. 평생교육백서 발간
8.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기본  
정책의 수립·시행
9. 한국형 온라인 대중강좌(K-  
MOOC)의 구축·운영
10. 온라인 대중강좌 등을 활용  
한 산업연계 단기 직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11. 성인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2. 한국방송통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3. 한국방송통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학사관리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14. 사이버대학(대학원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평생  
학습 진흥을 위한 연계·협력  
· 조정
6.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평생  
교육백서 발간
7.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기본  
정책의 수립·시행
8. 한국형 온라인 대중강좌(K-  
MOOC)의 구축·운영
9. 온라인 대중강좌 등을 활용  
한 산업연계 단기 직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10. 성인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한국방송통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2. 한국방송통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학사관리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13. 사이버대학(대학원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  
행
14.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형

- 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5.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전환 및 학생 정원 조정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6.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사이버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임원취임 승인, 정관변경, 재산 처분 허가 등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8. 사이버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 지원
19. 사이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평가
20. 사이버대학 특성화 지원 및 콘텐츠 개발·공동활용 지원
21.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아세안 공동운영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
22.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 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전환 및 학생 정원 조정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6. 사이버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임원취임 승인, 정관변경, 재산 처분 허가 등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7. 사이버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 지원
18. 사이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평가
19. 사이버대학 특성화 지원 및 콘텐츠 개발·공동활용 지원
20. 원격교육 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아세안 공동운영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
2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22.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지원
2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24.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및

23.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지원

24.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25.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및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26. 평생직업교육기획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평생직업교육정책 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⑱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공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2. 성인 문해교육의 실시 및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3.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 등 생활문해에 관한 사항 실시

4.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5. 시간제 등록제,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25. 전공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26. 성인 문해교육의 실시 및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27.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 등 생활문해에 관한 사항 실시

28.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29.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제, 시간제 등록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30. 평생교육 관련 시설·단체의 운영 지원 및 제도개선

31.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2. 자격체제 및 국가역량체제의 구축·운영

33.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지원 및 활용

34. 민간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35. 교육훈련과정 이수에 따른

선

6. 평생교육 관련 시설·단체 및 공익법인의 운영 및 육성, 제도개선 지원
7. 평생교육 통계조사
8.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9. 자격체제 및 국가역량체계의 구축·운영
10.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지원 및 활용
11. 민간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12. 교육훈련과정 이수에 따른 공인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13. 평생학습계좌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4.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지원 및 대학의 학습경험인정제 지원
15.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및 지역사회 학습모임의 육성 지원
16. 평생교육 바우처 등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충 지원

공인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36. 평생학습계좌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7.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지원 및 대학의 학습경험인정제 지원
38.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및 지역사회 학습모임의 육성 지원
39. 평생교육이용권 등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충 지원
40. 온국민평생배움터의 구축 및 운영
41. 지역사회학교 등 초·중등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
42.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 및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운영 지원
43. 평생학습박람회 등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4.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및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45. 학원, 교습소 및 과외교습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

17. 온국민평생배움터의 구축 및 운영

18. 지역사회학교 등 초·중등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

19.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운영 지원

20. 평생학습박람회 등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1.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 기업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2. 학원, 교습소 및 과외교습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3. 시·도교육청 학원 지도단속 정책의 수립·시행

24. 학원 관련 통계 관리 및 한국학원총연합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⑲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2.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촉진,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

선

46. 시·도교육청 학원 지도단속 정책의 수립·시행

47. 학원 관련 통계 관리 및 한국학원총연합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8. 평생학습정책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49. 그 밖에 평생교육지원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⑳ 전문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대학 학생 정원조정계획의 수립 및 학생정원 자율채정기준의 이행 점검

2.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운영학과 지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에 관한 사항

3.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운영 지원

- |   |   |
|---|---|
| <p><u>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u></p> <p>3. <u>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u></p> <p>4. <u>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및 해외취업·인턴십 지원에 관한 사항</u></p> <p>5. <u>특성화고등학교의 체제 개편 지원 및 제도 개선</u></p> <p>6. <u>거점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 및 소규모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u></p> <p>7. <u>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u></p> <p>8. <u>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센터 운영 지원</u></p> <p>9. <u>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및 교과용도서의 개발·운영 지원</u></p> <p>10. <u>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 교재의 개발 및 개선</u></p> <p>11. <u>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산업체 현</u></p> | <p><u>6. 전문대학 입시 관리 운영·지원</u></p> <p>7. <u>전문대학의 학생선발제도 운영과 관련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u></p> <p>8. <u>전문대학 학생선발제도 홍보 지원</u></p> <p>9. <u>전문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 지원</u></p> <p>10. <u>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u></p> <p>11. <u>전문대학의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에 관한 사항</u></p> <p>12. <u>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u></p> <p>13. <u>전문대학 재정지원 정책의 수립 및 개편에 관한 사항</u></p> <p>14. <u>고등직업교육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u></p> <p>15. <u>우수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u></p> <p>16. <u>직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을 활용한 직업과 학업 연</u></p> |
|---|---|

- 장실습 운영 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기능 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13.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전국 단위 취업지원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14. 정부부처·산업체·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육성에 관한 사항
15.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시행
16. 국가 수준 직업기초능력 평가제도의 수립·시행
17.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기초능력의 함양 및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8. 산업체 인사의 직업계고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19. 전국단위 기능 경진대회 및 고등학교 직업교육 연구대회

- 계 프로그램 지원
17. 전문대학·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8. 전문대학·법인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체제 개편
19. 전문대학·법인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0. 전문대학·법인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추진
21. 전문대학 법인의 운영지원 및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22. 전문대학·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 관련 제도 운영
23. 전문대학·법인의 설치·폐지·통폐합에 관한 사항
24. 전문대학·법인의 위치 변경 및 분교 설치인가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5.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26. 한국폴리텍대학 이사회의 운영 지원

의 운영 지원

20.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병역제도  
관련 지원

2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  
도개선에 관한 사항

22.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취  
업 통계조사 등 직업계 고등  
학교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23. 중등직업교육 활성화를 위  
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에 관한 사항

⑳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대학 학생 정원조정계획  
의 수립 및 학생정원 자율책  
정기준의 이행 점검

2.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운  
영학과 지정 및 수업연한 다  
양화에 관한 사항

3.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지원에 운영 지원

27. 전문대학생의 건강 증진 관  
련 현황조사 등 운영 지원

㉑ 청년장학지원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의 총  
괄·기획 및 점검

2. 교육부 소관 일자리 재정지  
원사업의 총괄·관리

3.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실  
적 점검

4.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의 과  
제발굴·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5. 교육부 소관 정책·계획 등  
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6.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7.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  
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  
원

8.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 청년  
정책 관련 소관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5.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의 운영 지원
6. 전문대학 입시 관리 운영 · 지원
7. 전문대학의 학생선발제도 운영과 관련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의 협력 ·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문대학 학생선발제도 홍보 지원
9. 전문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 지원
10.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문대학의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에 관한 사항
12.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3. 전문대학 재정지원 정책의 수립 및 개편에 관한 사항
14. 고등직업교육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5. 우수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

사항

9.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종합 대책의 수립 · 시행
10.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시행
11. 국가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학생 근로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에 관한 사항
15.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방안 마련 및 대출 제한 대학 선정
16. 학자금대출계정의 조성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도 · 감독
17. 학자금 지원 관련 법령 · 제도의 운영 · 개선 및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의 설치 · 운영
18. 대학 등록금 안정화 대책의 수립 · 시행
19.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16. 직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을 활용한 직업과 학업 연계 프로그램 지원

17. 전문대학·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8. 전문대학·법인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체제 개편

19. 전문대학·법인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0. 전문대학·법인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추진

21. 전문대학 법인의 운영지원 및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22. 전문대학·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 관련 제도 운영

23. 전문대학·법인의 설치·폐지·통폐합에 관한 사항

24. 전문대학·법인의 위치 변경 및 분교 설치인가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5.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설치·운영

20. 대학 등록금 납부제의 운영·관리

21. 등록금 감액·면제·반환·징수기일에 관한 사항

22. 대학생 1명당 교육비 및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

23. 등록금 통계산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국가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25.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26. 대학생 현장실습제도의 개선 및 관련 협의체의 구성·운영

27. 대학생 취업 지원 사업의 기획·운영

28. 대학생 해외 인턴십, 현장실습 및 연수취업의 지원

29.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장학금 지원

30. 대학의 창업 교육 및 창업 활성화 지원

26. 한국폴리텍대학 이사회의 운영 지원

㉑ 청년장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의 총괄·기획 및 점검
2. 교육부 소관 일자리 재정지원사업의 총괄·관리
3.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4.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의 과제발굴·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5. 교육부 소관 정책·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6.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7.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8.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 청년정책 관련 소관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31. 대학의 창업과 산업 간의 연계 방안 마련

32. 대학생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㉒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지원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지원

사항

9.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종합 대책의 수립·시행
10.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1. 국가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학생 근로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에 관한 사항
15.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방안 마련 및 대출 제한 대학 선정
16. 학자금대출계정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17. 학자금 지원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및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18. 대학 등록금 안정화 대책의 수립·시행
19.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20. 대학 등록금 납부제의 운영  
· 관리

21. 등록금 감액·면제·반환·  
징수기일에 관한 사항

22. 대학생 1명당 교육비 및 등  
록금 산정근거 공시

23. 등록금 통계산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국가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  
석

25.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지도  
자육성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26. ~ 28. 삭 제

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지  
원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의 정상화 관련 사학분쟁조정  
위원회 심의 지원

제7조(책임교육정책실) ①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책임교육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자치안전정책관 및 교원학부모지원관으로 하며, 책임교육정책관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교육자치안전정책관 및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책임교육정책관은 「교육부

제7조(학교정책실) ① 학교정책실장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교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학교정책관, 학교지원관 및 교원교육자치지원관으로 하며, 학교정책관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학교지원관 및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학교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3항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책임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0호부터 제6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책임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61호부터 제7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책임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책임교육정책실에 학교교수학습혁신과·교육콘텐츠정책과·동북아역사대응팀·기초학력진로교육과·교육자치협력과·지방교육재정과·교육안전정책과·교원정책과·교원양성연수과 및 학부모정책과를 둔다.

⑦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동북아역사대응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학교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 제28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1호부터 제7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학교정책실에 학교정책과·교육과정운영지원과·교육콘텐츠정책과·동북아역사대응팀·공교육진흥과·민주시민교육과·직업교육정책과·교원정책과·교원양성연수과·교육자치협력과·지방교육재정과·학교시설개선팀을 둔다.

⑦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동북아역사대응팀과 학교시설개선팀장은 과학기술서기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⑧ 학교교수학습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수업혁신 지원 기본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초·중등학교 수업혁신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수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의적 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교사의 창의교육 역량 강화
4.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
6. 창의적 체험활동의 홍보·지원 및 관련 기관 간 연계에 관한 사항

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⑧ 학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개선 총괄 및 입학제도의 개선
2. 초·중등 국립학교(대학 부설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3. 초·중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4.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5.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입학전형 영향 평가의 운영 지원
6. 일반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7.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9. 사이버 학습 운영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시스템의 개발·운영 지원  
10. 공공학습관리시스템 및 교원전용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지원  
11. 한국교육방송공사 고교 강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12. 저소득층·소외계층의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학습 지원  
13. 사이버 학습 및 온라인 수업 운영 관련 교육정보 격차해소 지원  
14.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개선 총괄 및 입학제도의 개선  
15. 고교평준화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시·도 고교평준화 제도의 운영 지원  
16.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17.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 총괄

및 추진 총괄  
7.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 총괄  
8.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9. 자율형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지정,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10.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1.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12.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이버 학습 운영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  
14. 고교평준화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시·도 고교평준화 제도의 운영 지원  
15.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16.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의 개선  
17. 초·중등 연구학교의 지정

- 18.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 19. 자율형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지정,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 20.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 21. 초·중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 22.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입학전형 영향 평가의 운영 지원
- 23.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의 개선
- 24. 혁신교육의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지원
- 25. 미래교육지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26. 초·중등 국립학교(대학부설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 27. 일반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

- 운영 및 총괄·관리
- 18. 국립학교인 연구학교 및 다른 부처가 요청하는 시·도 지정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 19. 영어교육 강화 및 영어교사 전문성 제고 정책의 수립·시행
- 20.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21. 한국교육방송 영어전용방송(EBSe)의 운영 지원
- 22. 영어교육 격차 해소 및 영어공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 23. 과학고등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 24. 교과특성화학교(예술·체육 계열은 제외한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25. 초·중등학교의 통합 운영 지원
- 26.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 27. 그 밖에 학교정책실 내 다른

28. 초·중등 연구학교의 지정·운영 및 총괄·관리
29. 국립학교인 연구학교 및 다른 부처가 요청하는 시·도 지정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30. 초중등학교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 디지털 역량 함양 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31. 영어교육 강화 및 영어교사 전문성 제고 정책의 수립·시행
32.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33. 한국교육방송 영어전용방송 (EBSe)의 운영 지원
34. 영어교육 격차 해소 및 영어공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35. 초·중등학교 과학·수학·정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6.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수업혁신 지원 기본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초·중등학교 수업 운영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수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홍보 지원 및 관련 기관 간 연계에 관한 사항
5.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7.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8. 교과별 교육과정해설서, 성취 수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등

37.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체험·탐구·활용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총괄
38.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9.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40.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 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41. 고교학점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42.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수립
43. 고교학점제 추진 및 지원 체제 구축·운영
44. 고교학점제 연구·선도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45.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6. 교과특성화학교(예술·체육 계열은 제외한다) 운영 지원

- 지원
9. 교육과정 연수 및 자료개발 등 현장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교육과정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12. 자유학기 교육과정의 운영 및 내실화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고등학교 학점 이수·미이수 제도 개선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관한 사항
14. 고교학점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5. 고교학점제 관련 실태조사 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6. 고교학점제 추진 및 지원 체제 구축·운영
17. 고교학점제 연구·선도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9.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 지역의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조

에 관한 사항

- 47. 일반 고등학교 학생 대상 전문대학 연계 직업교육의 위탁 과정 운영 지원
- 48.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 지역의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조성 지원
- 49.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50. 고교 교과교실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1. 고교학점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원 연수 등 협력 사업 운영
- 52.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
- 53. 선택형 교육과정의 이수 및 지도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지원
- 54.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 55.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 56. 교과별 교육과정해설서, 성

성 지원

- 20.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 21. 고교학점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원 연수 등 협력 사업 운영
- 22.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
- 23. 선택형 교육과정의 이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24. 학생 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25. 학생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6. 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 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7.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8.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 제고 지원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9.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

- 취수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등 지원
57. 교육과정 연수 및 홍보, 대학입시정책 연계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58.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의 운영
59. 교육과정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60. 자유학기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61. 자유학기제 지원체제의 구축·운영 및 내실화 지원
62.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63. 그 밖에 책임교육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⑨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2.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 개발에 관한 사항

- 터 운영에 관한 사항
30. 평가관리센터 지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1. 초·중등학교 인문학 교육 및 문해교육에 관한 사항
32. 초·중등학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 ⑩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2.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 개발에 관한 사항 지원
  3.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등 질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역사·한국사 관련 교과목 및 내용은 제외한다)
  4.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운영
  6. 교과용도서의 가격 결정, 발행·공급, 보상금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항 지원

3.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등 질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역사·한국사 관련 교과목 및 내용은 제외한다)
4.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운영
6. 교과용도서의 가격 결정, 발행·공급, 보상금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7. 교과용도서 발행·공급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8. 교과용도서 개발·활용 관련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국정도서 편찬 계획의 수립·시행
10. 초·중등학교 국정도서의 개발 및 관련 연구학교의 운영
11. 검정도서 검정 계획의 수립·시행(역사·한국사 관련 교과목 및 내용은 제외한다)
12. 검정도서의 검정 업무 수탁 기관의 관리·지원

7. 교과용도서 발행·공급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8. 교과용도서 개발·활용 관련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국정도서 편찬 계획의 수립·시행
10. 초·중등학교 국정도서의 개발 및 관련 연구학교의 운영
11. 검정도서 검정 계획의 수립·시행(역사·한국사 관련 교과목 및 내용은 제외한다)
12. 검정도서의 검정 업무 수탁 기관의 관리·지원
13. 인정도서 개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14. 초·중등학교 국정도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15.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교육 자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디지털교과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17. 초·중등학교 교육정보 콘텐츠 및 디지털교과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13. 인정도서 개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14. 초·중등학교 국정도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15.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의 진흥·육성 지원

16. 디지털교과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17. 초·중등학교 교육정보 콘텐츠 및 디지털교과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18. ~ 23. 삭 제

24. 교육콘텐츠정책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⑩ 동북아역사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의 역사 왜곡 대응에 관한 사항

2. 해외 교과서 오류 시정에 관한 사항

3. 동북아 역사문제 대책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동북아역사재단의 운영 지원

5. 초·중등학교 독도 교육에

18. 교육콘텐츠정책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⑪ 동북아역사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역사교육 강화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외국의 역사 왜곡 대응에 관한 사항

3. 해외 교과서 오류 시정에 관한 사항

4. 동북아 역사문제 대책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동북아역사재단의 운영 지원

6. 초·중등학교 독도 교육에 관한 사항

7. 초·중등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8.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등 질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역사·한국사 관련 교과목 및 내용으로 한정한다)

9. 검정도서 검정 계획의 수립·시행(역사·한국사 관련 교

관한 사항

6. 초·중등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7.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등 질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역사·한국사 관련 교과목 및 내용으로 한정한다)

8. 검정도서 검정 계획의 수립·시행(역사·한국사 관련 교과목 및 내용으로 한정한다)

⑪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및 결과분석 지원

3.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4. 인공지능 기반 학력진단 체제의 구축

5. 초·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사업계획의 수립 및 국제협력

6. 초·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과목 및 내용으로 한정한다)

⑫ 공교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정책의 총괄·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2. 사교육 경감 대책의 총괄

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및 결과분석 지원

5.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6. 학습지원 담당교원 제도의 운영 지원

7.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 및 운영 실태조사 실시

8. 인공지능 기반 학력진단 체제의 구축

9. 초·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사업계획의 수립 및 국제협력

10. 초·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시행 및 결과분석 지원

11.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시

- 시행 및 결과분석 지원
7. 진로교육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8. 초·중등학생의 진로교육 촉진 및 지원
  9.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집중 학년제·학기제 및 중학교 자유학기 진로탐색 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진로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1. 학교급·유형별 진로교육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12.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 및 진로지도 관련 인력 활용 지원
  13.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운영 지원
  15. 진로체험 정보제공 시스템 등 진로교육 정보망 운영 지원
  16. 진로 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 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12. 초·중등학생의 진로교육 촉진 및 지원
  13.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집중 학년제·학기제 및 중학교 자유학기 진로탐색 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진로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5. 학교급·유형별 진로교육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16.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 및 진로지도 관련 인력 활용 지원
  17. 중등학교 진로·학업설계 운영 지원
  18.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운영 지원
  19. 진로체험 정보제공 시스템 등 진로교육 정보망 운영 지원
  20. 진로 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1.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

-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17.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
18. 초·중등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지원
19. 진로체험기관의 발굴·지원 및 인증에 관한 사항
20. 초·중등학생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지원
21. 진로교육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22.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3. 진로교육 현황 조사 등 진로교육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24. 학생 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학생 평가 관련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26. 학생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7. 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 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8. 학교생활기록의 국가표준화

- 및 운영 지원
22. 초·중등학생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23. 진로체험기관의 발굴·지원 및 인증에 관한 사항
24. 초·중등학생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지원
25. 진로교육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26. 진로교육 현황 조사 등 진로교육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27.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공공학습관리시스템 및 교원전용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지원
29. 한국교육방송공사 고교 강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30. 저소득층·소외계층의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학습 지원
31. 사이버 학습 및 온라인 수업 운영 관련 교육정보 격차해소 지원
32.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

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29.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0.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1.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2.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33. 공교육정상화 정책의 수립 · 시행 및 관련 법령 · 제도의 개선

34. 사교육 경감 대책의 총괄

35. 고등학교 학점 이수 · 미이수 제도 개선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관한 사항

36.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⑫ 교육자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

시행 및 관련 법령 · 제도의 개선

33.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 운영 및 시 · 도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34.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5.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지원

36.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정책 이해 · 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

37. 학부모단체와의 협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8.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 제도의 개선

39. 교육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0. 공교육진흥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41. 그 밖에 학교지원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의 수립 및 제도 개선
- 2. 지방교육자치의 강화 및 협력
- 3.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정원(교원은 제외한다) 관리
- 5.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복무·급여·교육훈련 제도 개선
- 6.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 7.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진단
- 8.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9.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 10. 학교 평가제도 개선 및 지원
- 11.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12. 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

- 1.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2.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 3. 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 4.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5.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 6. 초·중등학생 자치역량 강화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7. 학생 간 상담 및 학생 간 중재 활동 지원
- 8. 학교 내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 9. 초·중등학생 독서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10.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11. 사서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 12. 초·중등학생 기후변화환경

- 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13. 유치원 및 초·중등 국립학교에 소속된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4.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15.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총액인건비 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인사관리 지원,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7. 국립대학 소속 대학회계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교육자치안전정책 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13. 초·중등학생 헌법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14.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5. 학교 체육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체육 수업 내 실화 지원
16. 학생선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스포츠강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8. 학교체육중앙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19. 체육계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지원
20.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21. 학교 예술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술 수업 내 실화 지원
22. 문화 소외 학생의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3. 예술고등학교 및 예술계열

⑬ 지방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3. 국세·지방세 제도 및 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
4.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통교부금의 교부 및 교부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6. 특별교부금의 교부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학교회계 제도 및 예산·결산 분석에 관한 사항
8.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련 업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회계·결산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편

교과특성화학교 예술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4. 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5.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및 예술교육공간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⑭ 직업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2.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촉진,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
3.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4.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및 해외취업·인턴십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성화고등학교의 체제 개편 지원 및 제도 개선
6. 거점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 및 소규모 특성화고등학교 등

- |  |  |
|--|--|
| <p><u>성기준 및 결산 작성기준의 수립과 예산·결산 통계의 분석</u></p> <p>11. <u>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회계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u></p> <p>12. <u>사립학교 재정결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u></p> <p>13. <u>공립 초·중·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u></p> <p>14. <u>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통합 등 적정 규모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u></p> <p>15. <u>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및 재정 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u></p> <p>16. <u>시·도교육청의 금고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u></p> <p>17. <u>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유도 및 제도 개선</u></p> <p>18. <u>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및 지방교육 기능분류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p> <p>19. <u>지방교육재정의 분석·평가</u></p> | <p><u>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u></p> <p>7. <u>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u></p> <p>8. <u>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센터 운영 지원</u></p> <p>9. <u>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및 교과용도서의 개발·운영 지원</u></p> <p>10. <u>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 교재의 개발 및 개선</u></p> <p>11. <u>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p> <p>12. <u>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기능 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u></p> <p>13. <u>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전국 단위 취업지원 네트워크의 구축·운영</u></p> <p>14. <u>정부부처·산업체·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특성화고등</u></p> |
|--|--|

에 관한 사항

20. 지방교육재정의 진단·성과 관리 및 재정 건전화 등 지방교육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

21. 지방교육재정 통합공시 및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2. 시·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3. 초·중·고·특수학교 학교발전기금 제도에 관한 사항

⑭ 교육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2.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 학교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4. 범정부 차원의 안전 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5. 학교안전과 관련한 재난대비 매뉴얼과 안전 관련 교사와

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육성에 관한 사항

15.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간 연계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시행

16. 국가 수준 직업기초능력 인증제도의 수립·시행

17.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직업기초능력의 함양 및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8. 산업체 인사의 직업계고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19. 전국단위 실무 경진대회 및 고등학교 직업교육 연구대회의 운영 지원

20.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병역제도 관련 지원

2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2. 자격 기반 교육과정(과정평가형 및 일학습 자격)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3. 중등직업교육 활성화를 위

- 학부모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6. 행정안전부 등 안전과 관련한 재난상황관리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운영
  7. 부 내 상황실 상황관리 관련 업무의 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8. 학교안전 위기상황 종합관리
  9. 학교안전 관련 위기상황의 접수·전파·보고
  10. 학교안전 관련 국가재난 대비 훈련의 준비·계획·실시·평가
  11. 소관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 업무의 종합·총괄
  12.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제도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14.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5. 학교 안전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6. 각급 학교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 ⑮ 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 초·중등교원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3. 초·중등교원의 복무,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책임 및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5. 교장 공모제도의 운영
  6. 수석교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원 포상에 관한 사항
  8.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수립
  9.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 소속 교원의 정원 관리
  10.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11.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17.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안전관리업무 지도·감사의 수립·시행

18. 학생안전지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9. 교육시설의 안전·유지 관리 실태 점검

20. 교육시설 안전 인증에 관한 사항

21.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22. 교육시설 안전·재난 관련 통계 및 현황 관리

23. 교육시설 안전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24.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

⑮ 삭 제

⑯ 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 초·중등교원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3. 초·중등교원의 복무,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12. 스승의 날 행사 기획 및 지원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14.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

15. 교육공무원의 전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교원교육자치지원 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⑳ 교원양성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교원 양성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2.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원의 설치·폐지와 학생 정원 조정·운영

3. 교직과정의 설치·폐지 및 교직 관련 학과의 운영 지원

4.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의 인사·학사제도 운영 및 개선

5. 교원 신규임용 시험·임용방식 다양화에 관한 사항

6. 교원 자격검정 기본정책 및

4. 교원의 책임 및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5. 교장 공모제도의 운영
6. 수석교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원 포상에 관한 사항
8.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수립
9.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 소속 교원의 정원 관리
10.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11.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12. 스승의 날 행사 기획 및 지원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14.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
15. 교육공무원의 전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교원학부모지원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⑰ 교원양성연수과장은 다음 사

- 교원 자격검정기준의 수립·시행
7.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원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
8. 초·중등교원 연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9. 교원 연수체제 개편 및 원격교육연수 제도의 운영 지원
10. 초·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1. 교원연수기관의 설치·폐지·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12. 교원연구대회에 관한 사항
13. 교원학습연구년제에 관한 사항
14. 교원양성·연수기관의 평가
15. 교육공무원의 보수(성과상여금을 포함한다)·복리·후생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6.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17.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교원 양성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2.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원의 설치·폐지와 학생 정원 조정·운영
3. 교직과정의 설치·폐지 및 교직 관련 학과의 운영 지원
4.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의 인사·학사제도 운영 및 개선
5. 교원 신규임용 시험·임용방식 다양화에 관한 사항
6. 교원 자격검정 기본정책 및 교원 자격검정기준의 수립·시행
7.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원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
8. 초·중등교원 연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9. 교원 연수체제 개편 및 원격교육연수 제도의 운영 지원
10. 초·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1. 교원연수기관의 설치·폐지

18. 교원단체의 설립·해산 및 운영 지원

19.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20.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조정 및 갈등 관리

21. 교원양성연수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⑰ 교육자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지방교육자치의 강화 및 협력

3. 교육특구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정원(교원은 제외한다) 관리

5.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복무·급여·교육훈련 제도 개선

6.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

- 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 12. 교원연구대회에 관한 사항
- 13. 교원학습연구년제에 관한 사항
- 14. 교원양성·연수기관의 평가
- 15. 교육공무원의 보수(성과상여금을 포함한다)·복리·후생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 16.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 17.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18. 교원단체의 설립·해산 및 운영 지원
- 19.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 20.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조정 및 갈등 관리
- 21. 교원양성연수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 ⑱ 학부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

- 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 7.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
  - 진단
- 8.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9.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 10. 학교 평가제도 개선 및 지원
- 11.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12. 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 13. 유치원 및 초·중등 국립학교에 소속된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 14.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 15.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총액인건비 운영 및 중기기본

을 분장한다.

1.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2.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시·도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3.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지원
5.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지원
6. 학부모단체와의 협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8. 교육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⑲ 삭 제

인력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인사관리 지원,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⑳ 지방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3. 국세·지방세 제도 및 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
4.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통교부금의 교부 및 교부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6. 특별교부금의 교부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학교회계 제도 및 예산·결산 분석에 관한 사항
8.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련

업무협약체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회계·결산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기준 및 결산 작성기준의 수립과 예산·결산 통계의 분석

11.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회계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사립학교 재정결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립 초·중·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1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통합 등 적정 규모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15.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및 재정 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16. 시·도교육청의 금고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유도 및 제도 개선

18. 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  
템 및 지방교육 기능분류시스  
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방교육재정의 분석·평가  
에 관한 사항

20. 지방교육재정의 진단·성과  
관리 및 재정 건전화 등 지방  
교육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

21. 지방교육재정 통합공시 및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2. 시·도교육청 출자·출연기  
관의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3. 초·중·고·특수학교 학교  
발전기금 제도에 관한 사항

⑬ 학교시설개선팀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교육시설에 대  
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초·중등학교 교육시설의 에  
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초·중등학교 노후학교 개선  
등 시설환경개선 및 관련 중

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4. 초·중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5. 초·중등학교 교육시설의 민

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

·운영

7. 초·중등학교 교육환경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국립부설(특수)학교 시설 예

산 편성 및 관리

9. 시·도교육청 및 초·중등학

교 시설 관련 유관기관 지원

및 지도

10. 학교시설개선팀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

한 사항

제8조(교육복지늘봄지원국) ① 교

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복지늘봄지원국에 학생

맞춤통합지원과·늘봄학교정책

제8조(학생지원국) ① 학생지원국

장-----

-----

-----

-----

-----

-----.

② 학생지원국에 학생지원총괄

과·방과후돌봄정책과 및 특수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  
른 “다문화학생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교육 지  
원 기본계획 수립

27. 이주배경학생 교육 관련 법  
령의 제정·개정

28. 이주배경학생 교육에 대한  
중장기 전망 및 분석

29. 이주배경학생 교육 관련 실  
태조사 실시

30.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31.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역사회와의 협  
력체계 구축

32.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  
를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 정  
책 추진

33. 다문화학생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4. 학생·학부모의 다문화 이  
해도 제고를 위한 사회인식  
개선 정책의 수립·추진

35. 다문화학생등 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 및 연수 지원

36. 삭 제

37.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38. 그 밖에 교육복지늘봄지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늘봄학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늘봄학교(초등 방과후 과정 및 초등 돌봄을 통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책의 총괄

2. 늘봄학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늘봄학교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제도개선

4. 늘봄학교 관련 재정·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5. 늘봄학교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6. 늘봄학교 실태조사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7. 늘봄학교 시설 및 아동친화적 공간 개선에 관한 사항

36. 학생지원총괄-----

--

38. ----- 학생지원국 -----

-----  
-----

⑤ 방과후돌봄정책과장-----

-----.

1. 초등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 정책의 총괄

2. 초등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 -----

--

3. 초등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 -----

4. 초등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 -----

5. 초등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 -----

6. 초등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 -----

7. 초등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 -----

8. 늘봄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9. 늘봄학교 관련 관계부처와의 교육프로그램 · 공간 · 인력 등 협력 · 연계

10. 늘봄학교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프로그램 · 공간 · 인력 등 협력 · 연계

11. 늘봄학교 관련 지역대학과의 교육프로그램 · 공간 · 인력 등 협력 · 연계

12. 늘봄학교 관련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육프로그램 · 공간 · 인력 등 협력 · 연계

13. 시 · 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인프라 구축 현황 점검 · 관리 및 컨설팅

14. (생략)

<신설>

<신설>

15. ~ 18. (생략)

8. 초등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 -----

9. 초등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 --- 공간 · 프로그램 · 인력 -----

10. 초등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 -- 공간 · 프로그램 · 인력 -----

11. 초등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 -----  
-- 공간 · 프로그램 · 인력 --  
-----

12. 초등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 ----- 공간 · 프로그램 · 인력 -----

13. ----- 초등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 -----  
-----

14. (현행과 같음)

15. 방과후 교육비 지원 정책의 수립 · 시행

16. 시 · 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17. ~ 20. (현행 제15호부터 제

⑥ 특수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통합교육 지원 및 장애 이해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신설>

7.·8. (생략)

9. (생략)

10. ~ 13. (생략)

1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5. ~ 18. (생략)

19.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수학교 운영 지원

20. ~ 24. (생략)

⑦ 이주배경학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이탈 학생 교육 지원

2. 다문화학생등(「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교육 지

18호까지와 같음)

⑥ -----  
-----.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7.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8.·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6. (현행 제9호와 같음)

10. ~ 13. (현행과 같음)

14. ----- 지원  
-----

15. ~ 18. (현행과 같음)

19. ----- 국립특수학교의 -----

20. ~ 24. (현행과 같음)

<삭제>

원 기본계획 수립

3. 다문화학생등 교육 관련 법

령의 제정·개정

4. 다문화학생등 교육에 대한

중장기 전망 및 분석

5. 다문화학생등 교육 관련 실

태조사 실시

6. 다문화학생등 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7. 다문화학생등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역사회와의 협

력체계 구축

8.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 지원

9. 다문화학생등을 위한 교육프

로그램 개발·보급

10. 학생·학부모의 다문화 이

해도 제고를 위한 사회인식

개선 정책의 수립·추진

11. 다문화학생등 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 및 연수 지원

제8조의2(영유아정책국) ① ~ ⑤

(생략)

⑥ 영유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의2(영유아정책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22. (생략)

<신설>

23. (생략)

⑦ 영유아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 (생략)

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4. ~ 28. (생략)

⑧ 영유아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어린이집의 영유아 안전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 8. (생략)

9. 유치원·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 18. (생략)

19.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보육전자바우처를 말한다)의 운영 및 관리

<신설>

<신설>

1. ~ 22. (현행과 같음)

23. 어린이집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24. (현행 제23호와 같음)

⑦ -----  
-----.

1. 2. (현행과 같음)

3. 영유아특별회계 -----  
-----

4. ~ 28. (현행과 같음)

⑧ -----  
-----.

1. ----- 안전 -----  
-----

2. ~ 8. (현행과 같음)

9. -----  
-- 지원 및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10. ~ 18. (현행과 같음)

19. 영유아 전자바우처시스템-----  
-----

20. 유치원·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기기 장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1.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운영

- ⑨ (생략)
- ⑩ 영유아교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영유아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3. (생략)
  4. 유치원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의 임용 및 공모에 관한 사항
  6.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8.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9. 10. (생략)
  11. 유치원 교원 평가에 관한 사항
  12. (생략)
  13.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

지원 및 지도

- ⑨ (현행과 같음)
- ⑩ -----  
-----.
1. (현행과 같음)
  2. 유치원 교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이하 “영유아 교원”이라 한다.)-----
  3. (현행과 같음)
  4. ----- 정원 및 임용-----
  5. 어린이집 교직원의 임면-----  
-----
  6. -----  
----- 복무 및 근무여건 개선-----  
-----
  7. -----  
----- 보수체계 및 처우개선-----  
-----
  8. 영유아교원의 교육·보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9. 10. (현행과 같음)
  9. -----  
----- 역량개발지원-----
  10. (현행 제12호와 같음)
  11. -----

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 설>

14. ~ 26. (생 략)

27. (생 략)

⑪ 교육보육과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 략)

<신 설>

제8조의3(학생건강정책국) ① 학생건강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학생건강정책국에 학생건강정책과·인성체육예술교육과·사회정서성장지원과 및 학교폭력대책과를 둔다.

③ (생 략)

④ 학생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교원, ---

26. 유치원 급식, 보건 업무 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

12. ~ 24. (현행 제14호부터 제26호까지와 같음)

25. (현행 제27호와 같음)

⑪ -----  
-----.

1. ~ 15. (현행과 같음)

16.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의3(학생건강안전정책국) 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  
-----  
-----  
-----  
-----.

② 학생건강안전정책국에 학생건강정책과·교육안전정책과·학생정서지원-----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학생 건강증진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2. 학생건강 실태조사 및 건강 검사제도 개선
3. ~ 8. (생략)
9.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0.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비 지원 계획 등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11.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12. 학교급식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3.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및 우수 식재료 사용에 관한 사항
14. ~ 20. (생략)
21. 그 밖에 학생건강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⑤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은 다

1. ----- 총괄  
-----  
· 수립· 시행
2. 학생건강 실태조사 운영 지원 및 초·중등학교 건강검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 8. (현행과 같음)
9. 초·중등학교 학교급식-----  
-----  
--
10. ----- 초·중등학교 학교급식비 -----  
-----
11. 초·중등학교 학교급식 ---  
-----  
--
12. 초·중등학교 학교급식 ---  
--
13. 초·중등학교 학교급식 ---  
-----  
--
14. ~ 20. (현행과 같음)
21. ----- 학생건강안전정책국  
-----  
-----
- ⑤ 교육안전정책과장-----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 25. (생략)

⑥ 사회정서성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정서능력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3.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4. 초·중등 학생자살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5.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관리·지원

6. (생략)

7. 전문상담교사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자격연수, 재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

9. (생략)

10.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운영

-----.

1. 학교 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2. ~ 25. (현행과 같음)

⑥ 학생정서지원과장-----

1. 사회정서역량 -----

2. 학생 마음건강 지원정책 수립·추진 및 제도 개선

3. 초·중등학교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

4. 학생자살 -----

5. 초·중등학교 정신건강검사 제도에 관한 사항

6. (현행과 같음)

7. 전문상담교사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8. ----- 역량 및 전문성 향상 -----

9. (현행과 같음)

10. 비대면 상담망 구축 및 운영 지원

11. 시·도교육청 학생상담지원 센터의 지원 및 교육·평가

12. 학교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 정책의 수립·시행

<신 설>

<신 설>

⑦ 학교폭력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폭력(성폭력은 제외한다)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시행
2.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지도
3. (생략)
4.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11.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운영 및 시·도교육청 학생상담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학생마음건강지원 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13. 초·중등학교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체계 및 응급심리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14. 초·중등학교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⑦ -----  
-----.

1. 학교폭력-----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2. 학교폭력 예방-----
3. (현행과 같음)
4. 초·중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회복 등의 지원, 가해학생 선도교육 지원 및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지원

5. ~ 7. (생략)

8.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지원

9. 학생언어문화 개선사업

10.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5. ~ 7. (현행과 같음)

8. 초·중등학생 -----

9. 초·중등학생 언어문화 개선  
지원

10. 초·중등학생 -----

제9조(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

① 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장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  
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 밑  
에 인재정책총괄과·인공지능  
교육진흥과·인공지능융합인재  
양성과·디지털교육기반과·교  
육데이터정책과·정보보호팀을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  
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장학관  
으로,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술  
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  
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  
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  
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인재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법무처 인재양성 정책의 기  
획 · 총괄

2. 국가인재양성 기본계획의 수  
립 · 시행

3. 국가인재양성 관련 법령 · 제  
도의 운영 · 개선

4. 법무처 인재양성전략회의 운  
영

5. 인력수급 전망 관련 조사 ·  
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6. 대한민국 인재상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7. 인재양성 우수기관 인증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인재정책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적역량 전략 수립 ·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경험·역량 등의 인증, 활용을 위한 디지털 배지 정책 도입 및 추진
11. 교육부 소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에 관한 정책의 기획·총괄
12. 교육부 소관 인공지능 및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의 기획·총괄
13. 교육부 소관 인공지능 및 디지털 인재양성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14. 법정부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 관련 협력에 관한 사항
15.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활용에 관한 사항
16.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협력 및 교육정보 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제기구 및 다자간 이러닝 협력사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정보화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이러닝 관련 박람회·국제세미나 등 총괄·지원
18. 이러닝 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운영·지원 및 민간기업과의 정보화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

19.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20. 에듀테크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및 민간과의 협력

21. 그 밖에 인공지능미래인재 지원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인공지능교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과학·수학·정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초·중등학교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3. 초·중등학교 인공지능교육 및 융합인재교육(STEAM)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4. 초·중등학교 인공지능 및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의 기획·수립

5. 초·중등학교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 관련 법령·제도

의 개선

6. 인공지능 및 융합인재교육(S TEAM)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및 융합인재교육(S TEAM)을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8. 체험·탐구·활용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총괄
9. 초중등학교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 디지털 역량 함양 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1.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12. 교원의 교육정보화 연수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
13. 학교 디지털 문해교육 기본 정책의 수립·시행
14. 초·중등학교 에듀테크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교원 대상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⑥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평생교육 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고등·평생교육 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의 수립·시행

3. 고등·평생교육 분야 인공지능 융합전공, 복수 연계전공의 운영 지원

4. 고등·평생교육 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인재양성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5. 산업 분야별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협력

6. 산업 분야별 범부처 인재양성 지원 사업의 수립·추진에 관한 협력

⑦ 디지털교육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분야 디지털 기반 관련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2. 교육 분야 디지털 기반 고도  
화에 관한 사항

3. 교육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의 수립·시행

4. 교육 정보화 관련 제도 및 표  
준에 관한 사항

5. 교육관련기관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운영

6. 교육정보화 기기 관련 시·  
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교육정보화 사업 사전협의제  
도의 운영

8. 교육정보화 예산의 검토 및  
조정

9.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운영

10. 부 내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  
립·시행

11. 부 내 포털, 온나라시스템,  
맞춤형 업무시스템의 구축·  
운영, 대표 홈페이지의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립학교의 교육 정보화 지  
원계획 수립·시행

13.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및 보급

14.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온라인 교육 민원서비스 운영 지원

15.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학생·학부모 서비스 제공

16. 입학 전형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정보의 상급 학교에의 제공

17.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정보시스템의 연계

18. 교육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9. 한국교육정보화재단 운영 지원

20. 인공지능·디지털 교수·학습·분석 체계 기반 구축

⑧ 교육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 및 교수·학습 등 교육분야 데이터 및 통계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2. 교육기본통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3. 교육기본통계 조사 및 서비

스 시스템의 구축·운영

4. 교육기본통계 조사기준 및 표준화된 조사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5. 교육기본통계의 운영
6. 교육 관련 주요지표 개발 및 관리
7. 교육 관련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8. 국제교육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9. 교육통계의 통합 조정 및 품질관리 지원
10. 교육정보통계위원회의 구성·운영
11. 교육정보공시(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기획·총괄·조정
12. 교육정보공시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13. 교육정보공시 시스템의 구축·운영
14. 교육정보 공시기준 및 표준화된 공시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15. 교육정보공시제의 운영

16. 교육정보통계 활용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17.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  
축·운영

18.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9. 사교육비 조사의 실시 지원  
및 결과 분석

20. 통계 기반 교육정책·연구  
의 지원

21. 교육 분야 데이터의 개방에  
관한 사항

2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  
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23. 직업계고 및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에 관한 사  
항

⑨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관련기관의 개인정보보  
호 및 정보보안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 법령·제  
도의 개선

2.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의 운  
영 및 교육기관 보안관제 실

시

3.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4.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및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 관리
5. 교육관련기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지정 · 보호
6. 교육관련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수준에 대한 진단 · 점검
7. 교육관련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계획의 수립 · 시행
8. 교육관련기관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보안적합성 검증 및 보안취약점의 점검 · 분석
9. 교육관련기관의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훈련 계획 수립 · 시행
10. 교육관련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 처리
11. 교육관련기관의 보안서버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2. 교육관련기관의 개인정보

<p>제18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p> <p>③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 <u>교육 분야 공무원로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u>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p> <p>제24조(한시정원) ① ~ ④ 삭제</p> <p>⑤ <u>입시공정성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u></p> <p>⑥ (생략)</p>	<p><u>비식별화 정책 수립 및 지원</u></p> <p>제18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u>교육 분야 공무원로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u>,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p> <p>제24조(한시정원) <u>&lt;삭제&gt;</u></p> <p>⑥ (현행과 같음)</p>
---	---

## 신·구정원대비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671</u>	• <u>683</u>	+12
특정직 계	• <u>91</u>	• <u>94</u>	+3
교육연구관	• <u>20</u>	• <u>21</u>	+1
교육연구사	• <u>57</u>	• <u>59</u>	+2
일반직 계	• <u>574</u>	• <u>583</u>	+9
	•	•	
	•	•	

<p>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통계 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 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 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p> <p style="text-align: center;">·</p>	<p><u>54</u></p> <p style="text-align: center;">·</p>	<p><u>55</u></p> <p style="text-align: center;">·</p>	<p>+1</p>
<p>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p>	<p><u>193</u></p>	<p><u>197</u></p>	<p>+4</p>

<p>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통계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식품위생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p> <p style="text-align: center;">·</p>	<u>146</u>	<u>149</u>	+3
<p>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식품위생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u>47</u>	<u>48</u>	+1
<p>행정서기보 · 사서서기보 · 공업서기보 · 보건서기보 · 식품위생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u>20</u>	<u>22</u>	+2

사무운영서기보	<u>10</u>	<u>8</u>	-2
.	.	.	
.	.	.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671</u>	• <u>683</u>	+12
특정직 계	• • <u>91</u>	• • <u>94</u>	+3
교육연구관	• <u>20</u>	• <u>21</u>	+1
교육연구사	• <u>57</u>	• <u>59</u>	+2
일반직 계	• <u>574</u>	• <u>583</u>	+9
•	•	•	
•	•	•	

<p>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통계 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 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 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p> <p style="text-align: center;">·</p>	<p><u>56</u></p> <p style="text-align: center;">·</p>	<p><u>57</u></p> <p style="text-align: center;">·</p>	<p>+1</p>
<p>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p>	<p><u>193</u></p>	<p><u>197</u></p>	<p>+4</p>

<p>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통계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식품위생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p> <p style="text-align: center;">·</p>	<u>144</u>	<u>147</u>	+3
<p>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식품위생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u>47</u>	<u>48</u>	+1
<p>행정서기보 · 사서서기보 · 공업서기보 · 보건서기보 · 식품위생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u>20</u>	<u>22</u>	+2

사무운영서기보	<u>10</u>	<u>8</u>	-2
·	·	·	
·	·	·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교육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의대교육지원관(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u>1. 의대교 육지원관 (존속기 한: 2025 년 12월 3 1일)</u>	<u>1. 의대교 육지원관 (존속기 한: 2026 년 12월 3 1일)</u>	
·	·	·	
·	·	·	
2. 의대교육기반과(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u>2. 의대교 육기반과 (존속기 한: 2025 년 12월 3 1일)</u>	<u>2. 의대교 육기반과 (존속기 한: 2027 년 12월 3 1일)</u>	
·	·	·	
·	·	·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교육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4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4. <u>제24조제5항</u> 관련 <u>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2월 28일)</u>	4. <u>제24조</u> <u>제5항</u> 관 련 한시정 원(존속기 한: 2026 년 2월 28 일)	<삭 제>	-4. 제24 조제5항 관련 한 시정원 (존속기 한: 2026 년 2월 2 8일)
<u>총계</u>	<u>2</u>	<삭 제>	-2
<u>일반직 계</u>	<u>2</u>	<삭 제>	-2
<u>행정사무관</u>	<u>1</u>	<삭 제>	-1
<u>행정주사</u>	<u>1</u>	<삭 제>	-1
·	·	·	
·	·	·	